

행정자치부

훈계·시정 요구

제 목 산지일시사용허가 부지 내 건축신고 수리 부적정

기 관 명 강원도

관 계 기 관 정선군

관 련 자 정선군 ○○읍(전 ○○읍) 지방○○○○ ○○○

내 용

지방○○○○ ○○○은 2008. 1. 7.부터 2015. 12. 31까지 정선군 ○○읍에서 건축인허가 업무를 담당하였다.

「산지관리법」 제2조에 따르면 ‘산지일시사용’이란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를 조림, 숲가꾸기, 임목의 벌채·굴취 또는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외의 용도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

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67조 등에 따르면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.

정선군 ○○읍에서는 2015. 5. 19. ○○○○○○(주)이 ○○읍 산000-0번지(4,634㎡)에 제2종근린생활시설(사무소) 157.30㎡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서가 접수되자 2015. 5. 22. 건축신고를 수리하고 2016. 5. 25. 건축물착공신고도 수리하였다.

위 건축신고서의 건축대지 산000-0번지(4,634㎡)는 ○○읍 산000-0번지(81,822㎡) 및 ○○읍 산000-0번지(6,971㎡)와 함께 건축주 ○○○○○○(주)이

풍력발전기 14기와 부대시설 설치 목적으로 2015. 3. 24.부터 2017. 12. 31.까지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(신고)를 받은 총 토지면적 93,427㎡에 포함된 일부분으로

산지일시사용허가(신고)는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산지전용허가와 달리 사용기간이 완료되면 산지를 원상복구 해야 하기 때문에 지목의 변경이 불가하다.

그런데도 ○○읍에서는 ○○○○○○(주)이 산000-0번지에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제2종근린생활시설(사무소) 신축 신고를 하자 신축 부지가 산지일시사용허가지로 허가기간이 완료되면 건축물을 철거(원상복구)하여야 하고 지목변경이 불가능한데도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하도록 건축신고를 위법하게 수리하였다.

결국, ○○읍에서는 건축허가(신고) 업무를 처리하면서 「건축법」과 관련법 협의에 따른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·반영하여 건축허가(신고)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해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여 건축인허가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.

조치할 사항 정선군수는

[훈계]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.

[시정] 건축허가(신고) 업무를 처리할 때는 관련법 협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·반영하여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고, 위 건축신고건에 대해서는 「산지관리법」의 목적에 맞게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로 변경하여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.